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8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 : 안도걸·안규백·정을호

서미화 · 조인철 · 서삼석

이기헌 · 김태년 · 강준현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 (안 제18조제1항).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제18조(조건부면세)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	<u>.</u>
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	
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	
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	<u>400만원</u>
로 하여 면제한다.	<u>.</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	ㅂ}
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	
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	
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u>3명</u> 이상을 양육	<u>2명</u>

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